

CISG상의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고찰

하강헌*

-
- I. 서론
 - II.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와 사례분석
 - III. 매수인의 물품보존의무와 사례분석
 - IV. 매수인의 물품재매각의무와 사례분석
 - V. 결론 및 시사점
-

주제어 : 매수인의 손해경감, 합리적인 손해경감조치, 물품보관의무, 물품재매각의무, 대체품재구매

I. 서론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이 계약위반을 범한 경우, 특히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매도인의 손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해경감의 의무가 자신에게 부과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관련 국제물품매매법¹⁾에서는 제77조에서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범하였다더라도, 그 위반당사자의 손해를 경감시키는 의무를 피해당사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는 양 당사자에게 공히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실무적

* 영산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E-Mail : khha@ysu.ac.kr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 또는 국제물품매매법이라 약칭한다. 본고에서 범명 표기없이 조항만 표기된 것은 전부 CISG(국제물품매매법)을 의미한다.

2 무역상무연구 제66권

으로는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상황이 더 빈번히 발생한다. 동 조는 손해경감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것이며, 물품보존에 관한 조항(제85-87조) 및 물품의 재매각²⁾에 관한 조항(제88조) 등이 손해경감의무의 일부로서 적용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시켜야 하는 상황은 대부분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이후에 발생한다. 하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하여야 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그 규정취지도 이해하여야 하지만, 다양한 상황별로 그 사례를 분석, 숙지하여 그 합리적인 대처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 동안 CISG상의 손해경감의무에만 논점을 두고 연구한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배성호³⁾는 이행기전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하여 영미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송양호,⁴⁾ 김범철⁵⁾ 등은 법리적 학술적 관점에서 CISG상의 손해경감의무를 고찰하였고, 심종석⁶⁾은 손해배상액 산정관련 연구에서 손해경감의무를 논하였다. 하강현⁷⁾은 이행기전의 손해경감조치로서 이행기전 구제권에 관하여 살펴본 바 있고 또한 매도인의 손해경감조치에 관하여 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여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하여, 유형별로 그 사례를 분석 및 제시하여,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이 자신의 손해경감의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조치의 합리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 2) 원 계약에 따른 물품의 판매와 계약해제에 따른 제3자에게로의 판매를 확실하게 구분 짓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후자의 경우 ‘재매각’이라 칭한다. 보통 ‘매각’이라 칭하는 번역 또는 해석이 많은 편이다.
 - 3) 배성호,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 영미법을 소재로 하여”, 한국부패학회보 제17권 제1호, 한국부패학회, 2012. 3, pp. 151~180.
 - 4) 송양호, “CISG상의 손실경감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1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12, pp. 1~22.
 - 5) 김범철, “유엔매매법상 손해경감의무”, 민사법연구 제9집, 한국민사법학회, 2001. 12, pp. 35~52.
 - 6) 심종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해석과 적용”, 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8, pp. 3~32.
 - 7)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8, pp. 3~26 ;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5, pp. 3~32.

II.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와 사례분석

1. 규정내용 및 관련 문제

1) 규정내용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중요한 의무는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 의무’, ‘서류교부의 의무’ 및 ‘물품의 소유권 이전의무’ 등으로 구분된다(제 30조).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등 ‘물품에 대한 제3자의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 즉 ‘지재권 무하자 물품의 인도 의무’를 매도인의 주요 의무로 거론하기도 한다.⁸⁾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 의무’이다. 국제물품매매법 제35조에서는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늘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⁹⁾ 설혹 매도인이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하는 등 계약위반을 범하였다더라도, 매수인은 그 위반당사자인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이것이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이다. CISG 제77조에서는 ‘손해경감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동 조에서는 “계약위반을 원용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했던 손실만큼 그 금액을 손해액에서 감액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론적 취지를 규정한 포괄적 규정이며, 합리적으로 손해경감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수의 다른 조항의 적용이 필요하다. 제86조의 ‘매수인의 물품보존의무’, 제88조의 ‘물품의 재매각의무’, 제71조의 ‘이행정지권’ 및 제72조의 ‘이행기전 계약해제권’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¹⁰⁾ 경우에 따라서는, CISG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거래 즉 제3자로부터 ‘대체품을 재구매’하는 것도 매도인을 위한 손해경감조치가 된다. 이러한

8) Schwenzer I., Fountoulakis C., *International Sale Law*, Routledge - Cavendish, 2007, p. 335.

9) 특히, 통상목적 적합성 기준은 다소 관념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으므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Flechtner H. M., *Unidroit Principles in Practice*, Transnational Publishers, 2002, pp. 362~363).

10) 손해경감의무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1,043~1,047. 본고에서는 제86조 및 제88조까지도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 무역상무연구 제66권

손해경감의무를 피해당사자에게 부과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위반당사자인 ‘상대방의 비용으로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¹¹⁾

PICC¹²⁾에서도 CISG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CISG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경감을 위한 비용 회복 규정’을 PICC에서는 제7.4.8조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¹³⁾

2) 관련 문제

손해경감의무조항 제77조를 매수인에게 적용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매수인이 수령한 물품을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가공’하는 것도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둘째, 물품재매각시 매수인이 재포장을 하여 재매각 가격을 높일 수 있었던 경우에, ‘재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재매각’하는 것도 손해경감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셋째, 계약에 불일치한 물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반송하는 도중 물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것도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넷째, 계약에 불일치한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이 그 물품을 수리하는 도중에, 제3자로부터 대체품을 구입한 경우, 이것도 매도인을 위한 손해경감조치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섯째,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한 손해경감의 조치로써 제3자로부터 대체품을 재

11) CISG는 ‘국제매매당사자들이 신의(good faith)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제8조 제1항)하에 이러한 투기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Schlechtriem P., Schwenzl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789.

12)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10, 이하 ‘PICC’라 칭함. PICC는 CISG를 해석 또는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즉 PICC는 CISG의 ‘Gap Filler’로서의 기능을 가진다(Zeller B.,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217~218). PICC는 CISG와 같이 적용 가능한 국가의 상인에게 적용(직접적용 및 간접적용 : 제1조)되는 당사자가 PICC를 당해계약의 준거법으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Letterman G.G., *UNIDROIT's Rules in Practice : Standard International Contracts and Applicable Rule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p. 17).

13) PICC 제7.4.8조 「(1) 불이행당사자는 피해당사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감될 수 있었던 범위까지는 피해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피해당사자는 손해경감의 시도에 합리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민법의 관련 조항에 관하여는 하강현, 전게논문, p. 6 참조.

구매하는 경우, 그 합리적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여섯째,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이행청구권(제46조)과 매도인을 위한 손해경감 조치의무(제77조)는 어느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가령 매도인이 물품인도를 지체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인도를 청구하는 것과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대체품을 재구매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모호하다.¹⁴⁾

일곱째, 매수인의 손해경감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궁급해진다.¹⁵⁾

2. 사례분석

1) 매도인이 물품을 가공처리한 경우¹⁶⁾

(1) 사건개요(스페인 연방 대법원 판결)

벨기에의 매도인은 세라노 햄을 만드는 원료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스페인의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은 중량과 두께가 계약에 부적합함을 알았지만 가공작업을 시작하였고, 매도인에게는 품질불량을 사유로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이에 전문가가 감정을 하였지만 이미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물품 또한 가공되어 인도된 원육이 계약에 부적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수령 후 물품검사를 시한내에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보관하지도 않고 가공처리를 한 것은 물품을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

14) 이는 매도인의 인도지체가 본질적 계약위반에 상당하는 것인지 매수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상황에 따라서는 손해경감의 원칙보다 더욱 더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개별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법원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이행청구권과 손해경감의무는 상호대립관계에 있는 조항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CISG 제정 당시 이 문제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Honnold J.O., (Edited and Updated by Flechtner H.M),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09, pp. 598 ~ 600).

15) 위반당사자의 손해를 피해당사자가 경감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위반당사자에게 있다(Kroll S., Mistelis L., Viscasillas P.P.,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Hart Publishing, 2011, p. 1036). 즉, 매수인의 손해경감조치가 불합리하였다는 입증은 매도인이 해야한다. 물론 매수인은 자신의 조치가 합리적이었음을 증명하고자 노력하기 마련이다.

16) CLOUT Case 1,096 : Spain: Zaragoza Provincial High Court (Previously heard by Zaragoza Court of First Instance No. 19, 30 June 2008) 31 March 2009 : A/CN.9/SER.C/ABSTRACTS/105.

6 무역상무연구 제66권

라고 주장하였다. 매수인은 “물품을 가공처리한 것은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였으며, 매도인은 물품의 부족함을 인지한 상태(제40조)¹⁷⁾에서 물품을 인도하였으므로 매수인의 물품검사시기(제38조)¹⁸⁾ 및 물품의 불일치 통지의무(제39조)¹⁹⁾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맞섰다.

(2) 판결내용

이 사건에서 스페인 연방 대법원은 “매수인은 물품의 검사 및 불일치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물품을 정상 수령하고 대금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의 보존(제86조)도 재매각(제88조)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즉, 매수인이 주장한 매도인의 악의(제40조) 및 적법한 손해경감조치(제77조)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가공작업을 시작한 것은 물품을 정상 수령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악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스페인 법원이 스페인 매수인에게 폐소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매수인이 주장한 물품의 가공작업이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물품에 대한 검사가 우선’ 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2) 재매각시 매수인이 재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²⁰⁾

(1) 사건개요(중국 중재법정 판정)

중국의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한 판정에서는 매수인의 재매각의무 이행시 재포장을 하는 것도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하는 조치로 보고 판정한 사례가 있다.

17) 매도인이 물품의 불일치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의 물품검사시기 및 불일치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Huber P., Mullis A., *The CISG*,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pp. 164~165).

18) 물품 수령 후 매수인은 ‘실행가능한 한 짧은 기한 내에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19) 매수인은 ‘발견한 불일치의 명세를 합리적인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례를 분석해 보면, 매수인이 ‘수령한 물품의 불일치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를 지체하여 자신의 구제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하강현, “CISG상의 불일치 통지의무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1권 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pp. 96~103 참조).

20) CLOUT Case 977 : China: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CISG/2003/09, 19 June 2004 : A/CN.9/SER.C/ABSTRACTS/98.

매도인과 매수인은 PTA라는 화학제품을 매매하였는데, 본 거래에서는 그 화학제품의 포장중량이 중요한 계약내용의 하나였다. 그러나 매수인이 수령한 화학제품의 포장중량은 계약에 부적합한 중량이었다. 이에 매수인은 동 제품을 제3자에게 재매각한 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매각 대금은 포장중량이 적은 탓에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2) 중재판정

본 사건에서 중재법정은 “매도인이 인도한 제품은 포장의 중량이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계약상 다루어졌으므로, 매도인은 본질적 계약위반을 범하였다.²¹⁾ 그러나 매수인도 당해 물품을 재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재매각하여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판정 이유를 밝히면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매수인의 부적절한 손해경감조치에 따른 매도인의 손실금액을 서로 상계 처리 한다”라고 판정하였다.

(3) 판정의의

본 사건에서 중재법정은 ‘매도인의 포장중량 부족을 사유로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자신도 재매각시 재포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 것은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시키지 못한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재포장을 포함하여 국제매매에서 피해당사자는 위반당사자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물품반송중 손상이 발생한 경우²²⁾

(1) 사건개요(독일법원 판결)

독일의 매수인은 스위스의 매도인에게 기계제작을 주문하였고, 매도인국 인도장소에서 수령시 계기판의 작동상태가 불량하여 인수거절의사를 표시한 후, 매수인국에서 다시 물품검사를 실시하였다. 여전히 계기판의 속도가 불량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리보완해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당해 기계를 매도인에게 반송하는데 동의하였다. 문제는 수리보완을 위한 반송 운송중 기계에 큰 손

21) 본 사건은 포장조건의 위반도 ‘본질적 계약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22) CLOUT Case 594 : Germany: Oberlandesgericht Karlsruhe, 19 U 8/02, 19 December 2002 : A/CN.9/SER.C/ABSTRACTS/53.

8 무역상무연구 제66권

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매도인은 반송물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반송하던 중 손상이 발생한 것은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가 있어 수리보완을 위해 반송 운송을 하는 도중에는 그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내용

본 사건에서 독일법원은 “기계에 불일치가 있음을 매도인이 인정하여, 수리를 위해 반송하는 것은 매도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매수인이 대신해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동일한 상태로 물품을 반환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이유가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²³⁾ 또한 매도인이 반송물품의 수령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의 계약해제선언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3) 판정의의

‘반송중의 위험과 책임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 즉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독일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본다. 계약에 불일치한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송하는 중에 발생한 물품 손상까지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손해경감의무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4) 매수인이 물품의 수리도중에 대체품을 구매한 경우²⁴⁾

(1) 사건개요(브라질 항소법원 판결)

브라질 국내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전기충전기를 구매하였으나, 물품의 수령 후 작동이 되지 않게 되자 수리하도록 전기충전기를 맡겨 놓고 그동안 다른 대체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이어 매도인은 수령한 물품의 수리비용 및 대체품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적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23) 제82조 제1항에서는 ‘동일한 상태로 물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2항 a호에서는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이유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24) CLOUT Case 1179 : Brazil : Appellate Court of the State of Rio Grande do Sul; - 5th Civil Chamber 70025609579, Prakasa Indústria e Comércio de Utilidades do Lar Ltda. v. Mercomáquinas Indústria, Comércio e Representações Ltda., 20 May 2009 : A/CN.9/SER.C/ABSTRACTS/122. 본 사건은 브라질 국내상인간 매매분쟁에 CISG조항을 참조하여 판결한 것으로, 이처럼 CISG는 국내상거래 분쟁의 판단에도 참조되고 있다.

매도인은 “전기충전기의 오작동은 매수인의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내용

본 사건에서 브라질 법원은 매수인에게 물품의 수리비용은 인정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토록 판결하였으나, 매수인이 청구한 대체품구매를 위해 발생한 부가적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물품의 수리도중에 다른 대체품을 구매한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동 법원은 판시에서 ‘합리적인 손해경감조치’의 기준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정하에 합리적 비즈니스맨이 취해야할 조치”를 언급하면서, 동 사건에서의 매수인은 ‘적절치 못한 대체품 구매로 비합리적인 손해경감 조치를 취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3) 판결의의

충전기의 오작동 원인이 매수인의 잘못된 사용 때문인지, 매도인의 부적합한 물품인도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리하는 도중에 매수인이 대체품을 구매한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만일 수리가 불가능하고 그 원인이 매도인의 책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한 후 대체품을 구매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라고 본다. 수리도중에 대체품을 구매하는 것은 일종의 ‘양립된 구제권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²⁵⁾

5)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내 재구매를 한 경우²⁶⁾

(1) 사건개요(중국 중재법정 판정)

독일의 매수인은 중국의 매도인으로부터 비타민C를 수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은 대련항에서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선적일자의 연장’을 요청하자 매수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곧이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국내시장가격이 상승’하였으므로 ‘물품의 가격을 인상시켜줄 것’을 매도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매수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지 아니하

25) CISG 제46조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양립된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취지로 보아 매수인의 ‘대체품 구매’는 부당하며, ‘매도인의 손해를 확대’시키는 조치가 된다.

26) CLOUT Case 681 : PRC: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 C], Vitamin C case, 18 August 1997 : A/CN.9/SER.C/ABSTRACTS/63.

10 무역상무연구 제66권

였고, 매수인은 이틀후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고 매도인의 홍콩자매회사로부터 당해 물품 수량의 반을 대체품으로 재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매수인은 중국 중재법정에 ‘매도인이 계약물품 전체에 대한 재구매(대체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배상’토록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반면에 매도인은 “매수인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재구매를 이행하여,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항변하였다.

(2) 판정내용

중국 중재법정은 “손해경감조치를 이행하는 ‘합리적인 기간’은 계약의 해제가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매도인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손해경감을 위한 재구매를 이행하였다”라고 밝히면서, 다만 매수인이 계약물품의 반만 재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전체 물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결하였다.²⁷⁾

(3) 판정의의

본 사건에서 매도인이 주장한 ‘손해경감조치의 합리적인 기간초과’의 기준일은 ‘계약해제 선언일로부터 기산된다’는 판시는 ‘합리적인 기간’의 산정에 중요한 기준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계약물품 수량의 반만 재구매하면서 ‘전체 수량으로 환산하여 배상’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II. 매수인의 물품보존의무와 사례분석

1. 규정내용 및 관련 문제

1) 규정내용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은 당해 물품을 크게, ① 계약에 적합한 물품, ② 계약에 부적합하지만 본질적인 계약위반은 아닌 물품, ③ 본질적인계약 부적합 물품 등 세 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①의 경우에는 순조로운 계약종료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②의 경우에는 수리를 포함한 하자의 보완을 매도인에 청구

27) 제75조에서는 계약해제후 손해배상액의 산정원리로써 ‘매수인이 대체품 재구매 가격과의 차액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게 되며(제46조 제2항), ③의 경우에는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하거나(제46조 제1항),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제49조 제1항 a호).

또한 ③의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물품을 매도인에게 물품을 ㉠ 반송하거나 ㉡ 물품을 제3자에게 재매각하거나 ㉢ 그러한 조치를 취한 후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하기 조치의 하나로써 대체거래(제3자로부터 물품을 재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제75조)도 발생하게 된다. 아무튼 물품수령 후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②,③)을 수령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물품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²⁸⁾

CISG 제86조에서는 매수인의 물품보존의무에 관하여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이후에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본 협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그의 합리적인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을 때까지 물품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2)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그의 처분하에 놓인 이후에 그가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하여 물품을 점유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대금의 지급이 없이 또한 불합리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비용이 없이 행하여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은 매도인이나 또는 매도인을 위하여 물품을 관리하도록 수권된 자가 그 목적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의 권리와 의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물품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및 매도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까지 물품보유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물품거절권 행사후에도 물품점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는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매도인의 관리자가 소재지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매수인의 의무는 배제된다. 이러한 물품보존을 위하여, 매수인은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할 수 있으며, 당해 임치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물품에 대한 보유권을 가진다.²⁹⁾

2) 관련 문제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보존의무는 매수인의 선택적 권리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must take ……preserve them) 의무사항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손해경감의무(제77조)의 특별조항이다.

28) 우리민법에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해야 한다」라고 물품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374조 제2항).

29) Huber P., Mullis A., *op. cit.*, pp. 362~363.

12 무역상무연구 제66권

매수인의 물품보존의무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하자가 심각하여 사용불능인 물품은 매수인이 폐기 또는 처분할 수 있는지, 즉 물품의 조속한 처분도 손해경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둘째,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고 보관하는 행위가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지 의문이 든다.

셋째, ‘제3자의 창고에 임치’의 범위에 법원에 공탁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³⁰⁾

2. 사례분석

1) 매수인이 작동불량 장비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³¹⁾

(1) 사건개요(러시아 중재법정 판정)

러시아의 매수인은 슬로베니아의 매도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수입한 후, 그 장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아니하자, 매도인에게 교체를 요청하였다. 다행히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보증서에는 ‘새로운 장비를 매수인의 비용으로 교체해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매도인은 불량한 그 기계의 반송을 매수인에게 요청하였지만, 매수인은 “그 기계장비는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자신이 처분해 버렸다” 하고 답하였다. 그러자 매도인은 ‘새로운 장비를 교체해줄 수 없다’라고 통지하였고, 매수인은 러시아 국제상사중재원에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을 하였다.

(2) 중재판정

본 사건에서 러시아 중재법원은 “보증서상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품을 청구하는 매수인의 권리는 존재하지만, 매수인은 제87조에서 규정한 ‘물품보존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박탈된다”라고 판정하였다.

30) 스페인 법원의 한 판례를 보면, 법원에 공탁하는 것도 보관을 위한 정당한 임치로 해석된다. CLOUT Case 489 : Spain: Provincial Court of Barcelona (Seventeenth Division) 11 March 2002, 138814/2002 : A/CN.9/SER.C/ABSTRACTS/42.

31) CLOUT Case 471 : Russian Federation: Tribu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t the R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rbitral award in case No. 164/1996, 17 November 1998 : A/CN.9/SER.C/ABSTRACTS/41.

(3) 판정의의

러시아 중재법정이 러시아 매수인에게 패소 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면 그 물품의 처분권은 매도인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매수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그 물품을 폐기할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CISG에서는 제85조에 매도인의 물품보존의무, 제86조에 매수인의 물품보존의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³²⁾

2) 매수인의 물품수령 후 보관이 계약변경을 인정하는 경우³³⁾

(1) 사건개요(스위스 지방항소법원 판결)

이태리의 매도인(원고)은 스위스의 매수인(피고)에게 건축자재를 수출한 후, 매수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자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스위스법원에 제기하였다. 계약체결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아이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은 당해 제품의 재고가 없어 좀 더 가격이 비싼 유사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법원에서의 심리 때,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물품의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 보관하였던 것은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하였다.

(2) 판결내용

본 사건에서 스위스 법원은 “매수인이 변경된 물품을 수령 보관한 것은 계약의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스위스의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한 매수인에게 물품대금 및 그 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3) 판결의의

매수인의 매도인을 위한 ‘손해경감 차원의 물품의 수령보관’이라는 주장도 일리 있어 보이지만, 매수인은 ‘당해 물품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수령거절 의사’를 전혀 표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변경된 물품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³⁴⁾ 따라서 스위스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본다.

32) 또한 제82조에서도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체품을 청구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물품을 매도인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 CLOUT Case 932 : Switzerland: Obergericht des Kantons Thurgau (Higher Court of the Canton of thurgau) ZBR.2006.25, 12 December 2006 : A/CN.9/SER.C/ABSTRACTS/93.

34) 물품수령후 매수인은 즉각 매도인에게 「We would refuse the goods delivered, are holding them at your disposal」이라는 취지의 통신문을 발송하였어야 했다. ‘at your disposal’이라는 문구만 들어있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본 사건에서의 매수인은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IV. 매수인의 물품재매각의무와 사례분석

1. 규정내용 및 관련 문제

1) 규정내용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매수인은 당해 물품을 계속 보관해야만 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그 물품이 급속히 변질되는 물품이거나 보관비용이 높은 물품인 경우에 더욱 그럴 것이다.³⁵⁾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CISG에서는 제88조에 물품의 (재)매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물품을 점유함에 있어 혹은 이를 수거해감에 있어 또는 대금이나 보존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불합리한 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매각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상대방(매도인)이 당해 물품을 점유 또는 수거(반송)하는데 있어 혹은 대금이나 보존비용을 지급하는데 불합리한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에, 상대방(매도인)에게 통지를 하고, 매수인은 물품을 재매각할 수도 있다. 이는 피해당사자인 매수인이 할 수도 있는 (may sell them) 선택적인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물품이 급속하게 변질되기 쉽거나 또는 그 보존에 불합리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이를 매각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는 가능한 범위까지는 상대방에게 그 매각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당해 물품이 급속변질물품이거나 보관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피해당사자(매수인)가 물품을 재매각하는 것은 그의 의무가 되는 것이다(must ... sell them).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까지는’(to the extent possible)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것이다. 동 조 제3항에서는 ‘물품의 보관과 재매각에 소요된 비용의 보유권리’를 재매각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물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매도인)에게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5) 제77조하의 손해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는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하는 것 및/또는 물품을 재매각하는 것도 포함된다(Ferrari F., Flechtner H., Brand R. A., *The draft UNCITRAL digest & beyond : cases & unresolved issues in the U.N. Sales Convention*, European law publishers, 2004, pp. 862~863).

2) 관련 문제

제88조 제1항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이나 보관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재매각의사를 통지한 후 재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항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재매각하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외에도 매수인의 물품재매각 조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매수인이 물품을 재매각할 때 매도인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재매각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둘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을 반송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나, 매수인의 반송통지를 매도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재매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셋째, 재매각 또는 손해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³⁶⁾

2. 사례분석

1) 매수인이 부당하게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³⁷⁾

(1) 사건개요(중국 중재법정 판정)

중국의 매수인은 인도네시아의 매도인으로부터 통나무를 수입하였다. 그런데 도착항에서 통나무를 검사한 결과, ‘수량이 부족하고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품질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매도인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면서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두 명의 전문가를 매수인국에 파견, 물품을 재검사하고 감정보고서를 받았다. 동 보고서를 검토한 매도인은 ‘물품이 계약에 일치 한다’고 보았지만, 매수인에게 ‘물품의 수령거절을 인정하고 물품대금의 반환도 할 수 있다’라고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은 이러한 ‘매도인의 통지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고 물품의 대부분을 재매각 처분’하였다.

36) 이러한 기준은 관념적인 기준이므로, 이를 객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 항소법원의 판시를 참조할 수 있는데, 동 법원은 손해경감의 합리적인 조치의 해석은 ‘유사동일한 사정하에서 합리적 비즈니스맨이 취해야할 조치’라고 해석하였다. CLOUT Case 1, 179 : Brazil : Appellate Court of the State of Rio Grande do Sul - 5th Civil Chamber 70025609579, Prakasa Indústria e Comércio de Utilidades do Lar Ltda. v. Mercomáquinas Indústria, Comércio e Representações Ltda. 20 May 2009.

37) CLOUT Case 806 : PRC: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CJETAC], 29 December 1999 : A/CN.9/SER.C/ABSTRACTS/78.

(2) 판정내용

본 사건에서 중국 중재법정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통지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물품을 재매각한 것은 물품을 수령한 것이며, 이는 제 8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국제무역관습에도 위배된다”라고 보아,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한다”라고 판정하였다.

(3) 판정의의

본 사건에서 중국의 매수인은 ‘물품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물품의 적법한 수령자가 되어 버렸다. 또한 제88조 제1항상의 물품 재매각을 이행한 것이라는 주장도 무리가 있다. 동 조항 적용을 호소하려면, 매도인이 대금을 지급(반환)하는데 ‘불합리한 지체’가 있어야 하지만, 매도인은 ‘대금 반환의사’를 통지한 상태였다. 또한 매수인은 ‘재매각의사’를 매도인에게 합리적으로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매각행위는 물품을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³⁸⁾

2) 매도인이 물품의 반송을 거부하여 매수인이 재매각한 경우³⁹⁾

(1) 사건개요(슬로베니아 고등법원 판결)

독일의 매수인(원고)은 슬로베니아의 매도인(피고)으로부터 문과 문틀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은 문과 문틀 각각 119, 123개에 대한 가송장을 송부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선지급금 18,000마르크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인도된 물품은 문과 문틀은 각각 22, 114개였고, 매수인은 문과 문틀을 조립하여 자신의 고객에게 판매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하고 ‘인도된 물품을 반송하겠다’라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였지만, 매도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침내 매수인은 물품을 재매각처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슬로베니아 법원에 제기하였다. 법원 심리중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의 명세를 통지하

38) 매수인은 제88조 제2항상의 ‘급속 변질물품’ 조항에 호소해볼 수도 있으나, 통나무는 그러한 물품에 분류되기도 어렵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까지는 재매각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대적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사실상 ‘통지를 할 시간이 없어 통지할 수 없었다’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무역실무자는 ‘재매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9) CLOUT Case 1,153 : Slovenia: Višje sodišče v Ljubljani (Ljubljana High Court) VSL sodba I Cpg 1305/2003, 14 December 2005 : A/CN.9/SER.C/ABSTRACTS/118.

지 아니하였다”⁴⁰⁾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송부한 가송장’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2) 판결내용

본 사건에서 슬로베니아 법원은 “매도인은 문과 문틀의 숫자가 같아야 함을 알고 있었고 모를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지연된 물품명세의 통지를 악용한 것이다⁴¹⁾”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동 법원은 “정당하게 해제된 계약에서의 물품을 매수인이 반송하겠다는 통지⁴²⁾를 매도인이 거절하였으므로, 매수인의 재매각처분은 매도인의 손해경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판시하면서, 슬로베니아의 매도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3)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 매도인은 제65조상의 ‘물품명세확정권’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 이는 제40조상의 ‘매도인의 악의’에 해당된다. 또한 매수인의 반송통지조차 거절하여, 매수인은 물품을 재매각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해제된 계약의 ‘물품처분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도인이 동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써 ‘물품을 재매각처분(제88조)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가 되는 것이다.

IV. 결론 및 시사점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은 설혹 매도인이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계약의 위반을 범하였더라도, 자신은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면,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손해경감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또는 ‘불합

40) CISG 제65조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의 명세를 합리적인 기간내 확정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이 그 물품의 명시를 확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매도인은 그 물품명세를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1) 이는 CISG 제40조(매도인의 악의)에 규정한 ‘매도인이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

42) 본 사건에서 매도인은 본질적 계약위반을 범하였고, 따라서 매수인의 계약해제선언은 정당하다.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제81조 제2항에 의거 ‘물품을 매도인에게 반송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생긴다.

리하게 손해를 경감시켰다'라는 이유로 상당수 그 배상액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하여 손해경감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수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매수인은 물품 수령후 물품(원재료)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 물품에 대한 가공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만일 그 물품에 부적합이 있더라도, 물품의 가공작업 시작은 물품의 정상 수령으로 인정된다. 물품검사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매수인이 의외로 많다.

둘째, 매수인이 물품을 재매각할 때, 물품의 재포장을 하는 것이 재매각 가격을 높이게 되어 매도인의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면, 매수인은 당해 물품을 재포장하여 재매각하여야 한다.

셋째,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이 물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하여, 매도인에게 반송하는 도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 점은 매도인이 유념해야 한다.

넷째, 매수인은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수리하는 도중에, 제3자로부터 대체품을 재구매할 권리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구제권리를 중복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하는 '합리적인 기간'은 '계약해제일'로부터 기산하여 그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지 '물품수령일'과는 무관하다.

여섯째, 매도인의 물품불인도와 관련, 매도인에 대한 이행청구권(제46조)과 손해경감을 위한 대체품 재구매(제75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일곱번째, 매수인의 손해경감조치가 불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반면에 매수인은 자신의 조치가 합리적이었음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물품보존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수령한 물품이 현저하게 계약에 부적합하더라도, 매수인은 자의적으로 동 물품을 폐기 또는 처분하여선 아니 된다. 반드시 매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해물품에 대한 처분권은 매도인이 갖게 된다. 무단 처분은 오히려 매수인의 정상 수령으로 해석된다.

둘째, 수령한 물품에 대한 불일치 통지없이, 또는 클레임 제기없이 물품을 수령, 보관하는 것은 변경된 계약에 동의하고 물품을 정상 수령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도인에게 통신문을 반드시 발송하여야 한다.

셋째,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하는 것에는 법원에 공탁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지재권 분쟁 등 법률적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것도 물품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매수인의 물품재매각의무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매수인은 물품재매각을 할 때 매도인에게 반드시 통지하길 권고하다. 급속변질물품 또는 보관비용이 과도한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대적 통신체계의 신속성을 감안하면 불통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둘째, 매수인의 적법한 물품반송요구를 매도인이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매수인은 동 물품을 재매각처분해도 된다. 이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사례분석 연구를 통하여 매수인의 손해경감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았지만, 그러한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다. 비록 매도인이 계약위반을 범하여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매수인은 진행되는 모든 상황에서 “매도인의 손해액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고민하여야 한다. 즉 매수인은 “유사 동일한 사정하에서 다른 합리적 비즈니스맨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까?”하고 자문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품보관이나 물품재매각을 지체하는 것도 매도인의 손해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되는 점임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손해경감과 관련하여, 본고에서의 사례를 숙지하는 것도 손해경감의무의 위반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김범철, “유엔매매법상 손해경감의무”, 민사법연구 제9집, 한국민사법학회, 2001.
- 배성호,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 영미법을 소재로 하여”, 한국부패학회보 제17권 제1호, 한국부패학회, 2012.
- 송양호, “CISG상의 손실경감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1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 심종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해석과 적용”, 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 _____, “CISG상의 불일치 통지의무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1집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 _____, “국제물품매매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 Flechtner H. M., *Unidroit Principles in Practice*, Transnational Publishers, 2002.
- Ferrari F., Flechtner H., Brand R. A., *The draft UNCITRAL digest & beyond : cases & unresolved issues in the U.N. Sales Convention*, European law publishers, 2004.
- Goods (CISG)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Huber P., Mullis A., *The CISG*,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 Honnold J.O., (Edited and Updated by Flechtner H.M),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09.
- Kroll S., Mistelis L., Viscasillas P.P.,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Hart Publishing, 2011.
- Letterman G.G., *UNIDROIT's Rules in Practice : Standard International Contracts and Applicable Rule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 Schlechtriem P., Schweng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Schweng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Schwenzer I., Fountoulakis C., *International Sale Law, Routledge - Cavendish*, 2007.

Schlechtriem P.,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Zeller B.,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CISG)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 (PICC)

CLOUT [Case Law on UNCITRAL Texts] Cases

ABSTRACT

A Study on the Buyer's Duty to Mitigate Seller's Damages in CISG

Kang-Hun HA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resulting from the breach.

Appropriate measures are those aimed at lessing the loss as far as reasonably possible. Such measures will typically be a resale of the goods by the seller or a cover purchase by the buyer.

The measures the injured party is expected to take in order to mitigate the loss must b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Article 77 will be applied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under Article 77.

A reduction of damages is the only remedy available to the party in breach in cases covered by Article 77.

If the buyer has received the goods and intends to exercise any right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o reject them, he must take such steps to preserve them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If goods dispatched to the buyer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ir destination and he exercises the right to reject them, he must take possession of them on behalf of the seller.

Article 86(1) requires that the buyer manifest his intention at the moment of receipt of the goods.

Article 86(2) envisages that the goods have been dispatched to the buyer and that they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ir destination.

Article 87 allows him to deposit them in the warehouse of a third person.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warehouse be public, or that it be a general warehouse for storage.

A party who is bound to preserve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6

may sell them by any appropriate means taking possession of the goods or in taking them back or in paying the price or the cost of preservation.

If the goods are subject to rapid deterioration or their preservation would involve unreasonable expense, a party who is bound to preserve the goods must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m.

A difference exists between paragraph Article 88 (1) which grants the right to sell, and paragraph (2) which imposes the duty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 goods.

According to Article 88(2), the party who wishes to sell must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such intention, to the extent possible.

Keywords : Buyer's Duty to Mitigate, Reasonable Steps to preserve the Goods, Deposit in a Warehouse, Re-selling to 3rd Party